

서울특별시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 안
번 호

127

제출일 : 1997. 11.
제출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 일부 자치구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농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개정조례로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함.

2. 주요골자

조례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농지법제46조,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 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다. 협 의 : 서울시 농유51314-2313('97.10.1)호에 의거 조례 폐지 통보
- 라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●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
운영에관한 조례 [1991. 3. 25.]
[조례 제147호]

개정 1995. 6. 10. 조례 제290호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, 관할구역과 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)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 3 조 (위원회의 기능)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(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, 농지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경영규모 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)의 처리
2.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
3.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, 심의

제 4 조 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제 4 조의 2 (소위원회) 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.

1.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
 2.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진전용 신고·관상수·재배·식재 신고
-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포함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관련기관의 임·직원중 2인과 농민대표중 2인을 선정 토록 한다.

제 5 편 시 민 제 4 장 산업

③소위원회는 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심사·확인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. (본조신설 95. 6. 10)

제 5 조 (위원의 추천 및 위촉요령) ①농지소재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, 동 개발위원회 또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합의체(이하 "주민총회"라 한다)등의 회의를 소집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 임대인 대표, 임차인 대표 각 2인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 후보자 추천서에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 현황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농업 관련기관장(농업협동조합, 농촌지도서, 농지개량조합, 농수산통계사무소, 농어촌진흥공사)은 농지소재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소속 임직원중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, 제2항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.

⑤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.

제 6 조 (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)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제 5 편 시 민 제 4 장 산업

2. 당사자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 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.

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 7 조 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농지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농지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, 회의 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)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관계기관등에의 협조)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조례개정의 건의) 위원회는 임차료 상한등이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적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구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5. 6. 1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5 편 시 민 제 4 장 산업

[별지 제1호서식]

농지관리위원회보자 추천서

임 차 인 대 표	1. 성명	2. 주민등록번호	
	3. 주소		
임 대 인 대 표	4. 성명	5. 주민등록번호	
	6. 주소		

위 사람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구 ○○동을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19 년 월 일

○○동장 주소

성명 (인)

첨부서류 : 1. 후보자(임차인대표)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.

2. 후보자(임대인대표)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.

제 5 편 시 민 제 4장 산업

[첨부 1]

후보자(임차인대표)인적사항 및 영농현황

인 적 사 항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	
	④ 주소지 거주기간	19 . . . ~ 19 . . . (년)		
	⑤ 최종학력	학교(졸업, 중퇴)		
	⑥ 주요경력			
	⑦ 소유농지	(단위 : m ²)		
영 농 현 황	전	답	과수원	계
	⑧ 임차농지	(단위 : m ²)		
	전	답	과수원	계
	⑨ 영농경력 19 . . . ~ 19 . . . (년)			
⑩ 주재배 작물				

제 5 편 시 민 제 4 장 산업

[첨부 2]

후보자(임대인대표)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

인 적 사 항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	
	④ 주소지 거주기간	19 . . . ~ 19 . . . (년)		
	⑤ 최종학력	학교(졸업, 중퇴)		
	⑥ 주요경력			
	⑦ 소유농지	(단위 : m ²)		
영 농 현 황	전	답	과수원	계
⑧ 임차농지	(단위 : m ²)			
현 황	전	답	과수원	계
⑨ 영농경력	19 . . . ~ 19 . . . (년)			
⑩ 주재배 작물				